

#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### ◆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

구분	내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 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-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① 신청자의 자녀 :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② 재혼배우자의 자녀 :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
선정방법	-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- 미달 시 : 기타지역(대전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) 거주자 공급
경쟁 시 우선순위	- 경쟁이 있는 경우,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」에 의한 가점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 -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유의사항	※ 임신과 입양의 경우, '임신진단서'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. ※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. ※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.

### ◆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
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(1) 미성년 자녀 수	40	5명 이상	40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 (태아, 입양, 전혼자녀 포함)
		4명	35	
		3명	30	
(2) 영·유아 자녀 수	15	3명 이상	1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(태아, 입양, 전혼자녀 포함)
		2명	10	
		1명	5	
(3) 세대구성	5	3세대 이상	5	- 직계존속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, 무주택자 한정)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-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
(4) 무주택기간	20	10년 이상	20	-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- 성년자(만 19세 이상)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-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(5) 해당 시·도 거주기간	15	10년 이상	15	- 신청자가 성년자(만 19세 이상)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※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※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(6)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5	10년 이상	5	-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
계	100			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
## ◆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0		무주택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- 견본주택에 비치 - 무주택 입증서류(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,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)
	0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
	0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0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-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'청약Home'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(www.applyhome.co.kr) [장 애인, 국가유공자, 철거주택소유자 제외] -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0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	0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- 단독세대일 경우
	0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0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(해당지역 : 대전 1년이상 계속 거주자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(20.11.19)로 지정하여 발급
	0		복부확인서	본인	- 10년 이상 장기복부 군인이 입주자자속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
다자녀 특별공급	0		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	본인	- 견본주택에 비치
	0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-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0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자녀	-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
	0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-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0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0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입양의 경우
	0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0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- 본인발급본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정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0		위임장	청약자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0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※ 상기 제출명세서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모집공고일(2020년 11월 19일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

※ 상기 제출명세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